

# 한국체육대학교대학인사위원회규정

제정 1984. 12. 31 (규칙 제 38호)

변경 1990. 9. 14 (규칙 제 90호)

1992. 11. 5 (규칙 제119호)

1995. 6. 14 (규칙 제143호)

1996. 8. 14 (규칙 제195호)

1997. 1. 24 (규칙 제200호)

1997. 5. 8 (규칙 제211호)

2004. 5. 7 (규칙 제428호)

2005. 8. 10 (규칙 제451호)

제 1 조(목적) 이 규정은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규정에 의거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(이하 “인사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조직) ①인사위원회는 교무과장, 학생과장, 훈련과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5인이상 15인 이내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조직한다.

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무과의 일반직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.

제 3 조(임기) 인사위원회 위원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

제 4 조(위원장 및 부위원장) ①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교무과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.

②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, 회무를 통리한다.

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 5 조(회의소집) 인사위원회 회의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,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제 6 조(심의사항)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총장이 교수, 부교수 및 조교수의 임용제청을 하고자 하거나 전임강사를 임용하고자 할 때의 그 임명제청 또는 임용의 동의에 관한 사항

2. 총장이 대학원장을 보직제청 하고자 할 때의 그 보직제청의 동의에 관한 사항

3. 교육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요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인사위원회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제청의 동의, 또는 임용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그 임용기간중의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.

1.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회활동

2. 교수, 연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

3. 교육관계법령의 준수,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

제 7 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위원이 있는 경우의 위원 정족수는 그 제척위원수를 감한 수로 한다.

제 8 조(제척 사유) 인사위원회 위원중 위원 자신에 관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심의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제 9 조(회의록)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2인 이상의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한다.

제 10 조(운영세칙) 이 규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.

부 칙 (1984. 12. 31. 제 38호)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규정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은 이 규정 시행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 (1990. 9. 14. 제 90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2. 11. 5. 제119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5. 6. 14. 제143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6. 8. 14. 제195호)

이 규정은 1996. 9. 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7. 1. 24. 제200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1997. 5. 8. 제211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4. 5. 7. 제428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05. 8. 10. 제451호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